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경인항의 위치 및 경인항·인천항의 수상구역 내 거점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인항·인천항 내 행정구역 표기 변경(안 제3조 별표 1 개정)

경인항의 위치에 검단구를 추가하고, 경인항·인천항의 수상구역 내 거점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당초 서구에서 검단구로 변경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인항	인천광역시 <u>검단구,</u> <u>서구 및</u> <u>경기도</u> <u>김포시</u>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3분 00.91초, 동경 126도 35분 50.44초(인천광역시 <u>검단구</u> 오류동 거침도 남단)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44.56초, 동경 126도 35분 24.9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해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인근)지점과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59.87초, 동경 126도 47분 59.52초(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근) 지점과 북위 37도 35분 59.21초, 동경 126도 47분 59.87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면(수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4분 25.66초, 동경 126도 45분 22.44초 지점과 북위 37도 34분 28.47초, 동경 126도 45분 32.32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 지점과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운하 수면
나. 인천항	인천광역시	북위 37도 32분 49.84초, 동경 126도 35분 58.13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34.44초, 동경 126도 35분

		32.37초(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거침도 남단)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36.05초, 동경 126도 34분 08.57초(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지점에서 북위 37도 34분 44.05초, 동경 126도 33분 20.58초(세어도 북단) 지점 및 북위 37도 32분 04.07초, 동경 126도 30분 52.59초(영종도 북단)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26분 47.11초, 동경 126도 29분 10.60초(영종도 남단) 지점에서 북위 37도 21분 41.14초, 동경 126도 26분 26.62초(해녀도) 지점, 북위 37도 18분 56.16초, 동경 126도 28분 49.61초(남장자서) 지점 및 북위 37도 17분 19.17초, 동경 126도 31분 58.59초(대부도 서북단 타구봉 끝단)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송도에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이) 끝단에서 오이도 선착장 끝단, 옥귀도, 군자매립지 선착장 끝단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시화호 방조제 및 한화교 내륙쪽 해면은 제외한다.	
--	--	--	--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 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 1. 무역항 <table><tr><th>항만명</th><th>위치</th><th>수상구역</th><th>육상구역</th></tr><tr><td rowspan="4">가. 경인항</td><td rowspan="4">인천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td><td>---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td><td rowspan="4"></td></tr><tr><td>---</td></tr><tr><td></td></tr><tr><td></td></tr><tr><td rowspan="4">나. 인천항</td><td rowspan="4">인천광역시</td><td>---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td><td rowspan="4"></td></tr><tr><td>---</td></tr><tr><td></td></tr><tr><td></td></tr></table>	항만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가. 경인항	인천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나. 인천항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 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 1. 무역항 <table><tr><th>항만명</th><th>위치</th><th>수상구역</th><th>육상구역</th></tr><tr><td rowspan="4">가. 경인항</td><td rowspan="4">인천광역시 검단구,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td><td>---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td><td rowspan="4"></td></tr><tr><td></td></tr><tr><td></td></tr><tr><td></td></tr><tr><td rowspan="4">나. 인천항</td><td rowspan="4">인천광역시</td><td>---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td><td rowspan="4"></td></tr><tr><td></td></tr><tr><td></td></tr><tr><td></td></tr></table>	항만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가. 경인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					나. 인천항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				
항만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가. 경인항	인천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나. 인천항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항만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가. 경인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																																			
나. 인천항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연 락 처	(051) 773 - 5920